

제1장 총칙

제1조

본 학회는 한국통역번역학회(구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)라 칭하고, 영문 명칭은 기존의 KSCI(Korean Society of Conference Interpreting)를 KSTI(Korean Society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)로 변경한다.

제2조

본 학회는 통역 및 번역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모임으로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한 학문의 발전 및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
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학회지의 정기적 발행
2. 연 2회의 학술대회 개최
3. 해외연구자 및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
4. 우수 연구업적 발굴 및 지원
5. 신진연구자 지원
6. 기타

제4조

본 학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의 근무지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5조
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원

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
- (1) 통역, 번역 및 기타 관련 학문(어문학 등)의 석사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
- (2) 통역, 번역 및 기타 관련 학문에서 통역, 혹은 번역 관련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
- (3) 전문 통역사 또는 번역사로서의 실무 경력이 있는 연구자
- (4) 기타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.

2. 명예회원

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결의된 개인 또는 단체는 본 학회 임원의 추대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.

3. 평생회원

평생회비를 납부하고 본 학회의 학술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

제6조

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절차를 거쳐 학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7조

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회원은 학회지에 투고할 수도 있고,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.

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

제8조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명칭, 인원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.

1. 회 장 [1인]
2. 편집위원장
 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(일정 수)
3. 총무이사
4. 정보이사
5. 재무이사
6. 국제협력이사
7. 감사
8. 기타

제9조

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또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2. 운영위원회는 제 8조에서 정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 부재시는 운영위원회가 임무를 대신한다.
3. 각 임원은 아래의 업무를 집행한다.
 - 편집위원장 : 투고 논문의 심사, 선정, 편집,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
 - 총무이사 : 연 2회의 학회 기획 및 운영
 - 정보이사 : 학회의 아카이브, 홈페이지 운영 및 학회원 대상 정보공유
 - 재무이사 : 재무관리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일
 - 국제협력이사 : 본 학회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학술단체와의 교류
 - 감사 : 회계 및 학회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

제10조

학회의 임원단은 학회장이 위촉하고 총회(봄, 가을 학술대회)에서 추인한다.

제11조

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

제13조

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

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임원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
제15조

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
1. 회칙 및 운영 내규(재무, 편집위 관련 규정) 개정
2. 임원 선출
3.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
4. 회원의 입회 승인
5. 학술지 발간 관련 사항
6. 학술발표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
7. 관련 연구 사업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4장 학술대회

제18조 본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통번역학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.

제19조 학술대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장 재정

제2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게재료, 사업수입금,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6장 회칙개정

제22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. 단 본 개정 회칙은 2026년 2월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26년 봄 총회에서 추인한다.

부칙

제1조 이 회칙은 199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이 개정 회칙은 202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